

## KEA, 차세대 3D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차세대 3D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조직이 정식 출범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윤중용)는 19일 차세대 3D 기술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3D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지원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3D 산업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TV·모니터 등 하드웨어 분야는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3D 제작 장비와 콘텐츠는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져 문제로 지적돼 왔다. KEA는 지난해 2월 국내 3D 분야 산·학·연을 모아 차세대 3D 융합산업 컨소시엄(3D FIC)을 조직하고 10월에는 월드 3D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3D 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다. KEA는 3D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3D산업을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기술을 선점한 외국 기업들의 특허 공세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 3D제작 장비, SW·콘텐츠 분야에 투자할 2000억원 규모 3D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세계 3D산업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초에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10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세계 3D산업은 지난해 시장 규모가 144억달러였지만 영화 ‘아바타’를 계기로 폭발적 관심이 쏠리면서 2015년까지

휴대폰·TV·모니터를 중심으로 1616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최상미 KEA 전자정보팀장은 “3D 기술은 앞으로 의료·광고·게임·방송·영화·교육·건설 등 전통산업에서 거대한 신시장 수요를 창출할 전망”이라면서 “차세대 3D산업 종합지원센터가 국내 3D산업을 세계 정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세대 방송장비 육성에 MBC와 KEA가 손을 잡았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MBC와 손잡고 차세대 방송장비 육성에 나선다. 이는 방송국과 제조업체 기술자간 교류 활성화로, 방송장비의 국산화가 촉진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KEA와 MBC는 차세대 방송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1월19일 MBC와 KEA, 관련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방송 협력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KEA와 MBC는 △디지털 방송장비 기술 동향 교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방송장비 핵심 기술 이전과 제조업체 기술자 현장방문 △기술자간 교류 활성화 및 국산화 촉진 협력 등에 합의했다. KEA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내 방송장비업체가 주요 수요처인 방송사와 상호간 정보교류 및 시장 활성화에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설날을 맞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하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 1. 18.~ 2. 12.까지 26일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건은 설날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처리의 신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부터는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신고센터로 추가하였으며, 간편한 처리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전에 유선(전화)을 통해 해결가능성을 위한 당사자간의 자율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소에는, 일정규모(건설: 시공평가순위 50위, 제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으나, 동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처리한다. 신고는 서류외에도 FAX 또는 전화신고도 가능하며, 조사는 FAX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하였다. 관련단체(8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

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다. 설날을 앞두고 설치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함과 동시에, 여느때에 비해 자금 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이다.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이다.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이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이다.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턴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이다. 하도급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한 물품의 원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이다.